

구분	주요 내용	대응 계획
1. 통합환경법	■ 대기, 수질 통합 인허가 실시 – 법규 – 해당 사업장 : 청주 공장, 오창 기점, 오창 2지점 – 전자부품제조업은 '23년 12월까지 통합법 인허가 취득을 완료해야 함	 ▷ '22~'23년 통합법 인허가 취득계획 - 청주지점: '23년 12월 인허가 취득계획 - 오창(1,2)지점: '23년 5월 인허가 취득계획
2. 대기환경보전법	 가스열펌프(GHP) 대기배출시설 등재 - 법규 해당 사업장: 오창지점 '23년 1월시행: 가스열펌프(GHP)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등재함 4, 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의무 - 법규 해당 사업장: 오창3지점 '22년 5월시행: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(4종, 5종)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의무 	 ▶ 가스열펌프(GHP) 배출시설해당여부 검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및 저감장치 부착 (오창지점: '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 검토) ▶ 오창3지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(오창3지점: '25년 06월 30일까지 설치계획)
3. 화학물질관리법	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(신고) 실시 - 법규 신규 또는 변경 취급시설 발생 시 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·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실시 -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취급시설의 배치·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조기 작성 - 법규 (구)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	 ▶ '23년 수시 영업허가 변경허가(신고) 실시 - F9 신규 투자에 따른 취급시설 신설 등 ▶ '23년 설치·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- F9 신규 및 기존 정기검사 대상 취급시설 ▶ '23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조기 작성 - 유예기간: '24년 12월 30일 까지